

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4-1호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월 4일

방송통신사무소장

- 공고사유: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공고기간: 2024.01.04. ~ 2024.01.17.(14일)
-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압류금액	체납자 주소
1	이상도	1983.00.21.	채권(예금)	₩2,000,00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장신로 12 번길
2	윤석봉	1980.00.20.	채권(예금)	₩8,515,16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 4 길
3	박윤용	1972.00.17.	채권(예금)	₩1,464,000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로
4	최희영	1986.00.06.	채권(예금)	₩2,640,000	경기도 이천시 향교로 69 번길
5	이정훈	1973.00.17.	채권(예금)	₩4,395,000 ₩2,887,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7 길
6	박수영	1969.00.03.	채권(예금)	₩2,995,000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7	김인선	1965.00.20.	채권(예금)	₩3,862,500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3-347-2103, 2106)
-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